

공 시 송 달 공 고

자연공원법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에 앞서 사전통지안내문 및 감경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,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17. 2. 01.

광주광역시 동구청장



1. 제 목 : 자연공원법 위반자 과태료 처분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
2. 공고기간 : 2017. 2. 1 ~ 2017. 2. 16(15일간)
3. 공고내용

| 성명 | 주 소 | 위반일 | 위반 내용 | 예정된 처분내용 | 관련법규 |
|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|
| 이혜영 | 광주광역시 북구 | 2017.1.14 |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주차행위 | 과태료 50,000원 (자진 납부시 감경 금액 : 40,000원) | 자연공원법 제27조 제1항 제7호 |
| 박영재 |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| 2017.1.14 |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행위 | 과태료 100,000원 (자진 납부시 감경 금액 : 80,000원) | 자연공원법 제27조 제1항 제8호 |

4. 기 타

- 가. 의견 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처분 내용대로 처리됨을 알려드리며.
 - 나.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, 장애인(3급이상), 국가유공자(상이등급 3급이상), 미성년자는 의견 제출기간내 질서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(50%)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다. 과태료를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의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.2%에 상당하는 증가산금이 최고 60개월까지 추가로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.
5. 의견제출처 : 광주광역시 동구청 공원녹지과 (☎ 062-608-2965, FAX 062-608-2999)

의견제출서

| | | |
|---------------|--------|--|
| 1. 예정된 처분의 제목 | | |
| 2. 당사자 | 성명(명칭) | |
| | 주소 | |
| 3. 의견 | | |
| 4. 기타 | | |

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(제31조제3항)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의견제출인 주소 :

(전화:)

성명 :

(서명 또는 인)

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

비
고

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2.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.